

[특집]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

■
최 화 인

[인천교구 교구법원 공증관 신부]

서 론
제1장 단체의 목적
제2장 단체의 설립
제3장 통치 및 운영
제4장 단체의 해산과 청산
결 론

서 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공의회’라고 불릴 만큼 평신도에 관해 많이 다루었다. 이 공의회를 통해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었다.¹⁾ 여기에서 말하는 평신도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²⁾ 이를 위해 “평신도는 현세 질서의 개선을 고유 임무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바로 행동하여야 한다.”³⁾ 그리고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가 오로지 평신도들을 통

* 이 글은 2024년 2월 교회법 석사 청구논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를 요약한 글임.

1) 참조: 전두병, 「20세기 교회 문헌에서의 평신도의 모습」, 『사목연구』, 42(2019), 가톨릭대학교사목연구소, 96쪽.

2) 「교회헌장」, 31항.

3) 「평신도 교령」, 7항.

해서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 안에서 교회를 현존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⁴⁾

평신도는 주로 본당 사목구에서 봉사자로 일하며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본당 사목구에서의 활동이 제한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느끼는 평신도가 늘고 있다. 현대인의 삶의 반경이 넓어졌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평신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 지려는 의식 수준도 발전했기 때문이다. 또한 평신도들이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원하는 사목 수준과 그 범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서품을 받는 탁덕의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금 현재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직무는 매우 과중한 편이어서⁵⁾ 앞으로도 본당 사목구에서 평신도들의 요구에 곧바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시대에 대한 본당 사목구의 지역적인 한계와 사목적인 적응력의 약화에 직면하여 그 안에서 성직자만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히 성직자를 구심점으로 성사가 거행되는 본당 사목구라는 구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잘 유지해야 한다.⁶⁾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평신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과 만남을 잘 담아낼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평신도가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 안에서 더욱 자발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타진해 볼 때,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를 통해 이러한 요청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⁷⁾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서 더 많은 신자와 더불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하느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품

4) 「교회헌장」, 33항.

5) 참조: 교회법 제528조~제530조, 제532조~제535조.

6) 참조: 고준석, 「본당과 교회운동의 관계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 제24호(2014),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1~22쪽; 참조: 고준석, 「가톨릭본당에서의 평신도들의 유기적 협력: 역사-법률-사목적 접근」, 『종교연구』, 제57집(2009), 한국종교학회, 198~199쪽.

7) 참조: 김현조,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의 ‘구성’: 역사, 원리, 실제」, 『신학전망』, 제222호(2023), 광주가톨릭대학교, 70~71쪽.

고 이 글에서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연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제1장 단체의 목적⁸⁾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의 목적은 교회법 제298조 1항과 제21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하는 것이다.⁹⁾ 또한 그 밖의 사도직 사업들인¹⁰⁾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 사업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¹¹⁾

1. 공립 단체

공립 단체의 목적은 교회법 제301조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항을 보면 본성상 교회의 권위에 유보된 목적을 추구하려는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관할권자의 소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3항에서는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설립되는 단체는 공립 단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공립 단체는 본성상 권위에 유보된 목적을 추구할 수 있고, 사립 단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2항을 보면 교회의 관할권자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본성상 권위에 유보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단체 역시 설립할 수 있다고 한다.¹²⁾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관할권자가 설립하는

8) 원래 교회법 석사 청구논문에는 이 장 앞에 ‘제1장 1983년 법전 이전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의 역사’ 부분이 있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했다.

9) 참조: 교회법 제298조 1항.

10) Cf.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1(Libri I-II), Francesco Catozzella / Arianna Catta / Claudia Izzi, et al.(eds.), Bologna: EDB, ³2011, p.391(1678).

11) 참조: 교회법 제215조, 제298조 1항.

12)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단체는 공립 단체이므로, 공립 단체는 1항에서처럼 본성상 권위에 유보된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고, 2항에서처럼 본성상 권위에 유보되지 않는 목적 중에서 선택하여 추구할 수도 있다. 대신 이 후자의 목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1.3. 본성상 교회의 권위에 유보되지 않는 목적’에서 다루겠다.

1.1. 교회의 이름으로 행함

공립 단체는 ‘교회의 이름으로’ 행한다.¹³⁾ 교회 용어 안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표현은 구(舊) 법전인 1917년 법전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현(現) 법전인 1983년 법전 자체 안에서 사용된 결과로, ‘교회 권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성상 권위에 맡겨진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만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교회 권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⁵⁾ 법전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립 단체와 권위가 거의 동일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회기에 있었고, 마침내 ‘교회의 이름으로’가 채택되었다.¹⁶⁾ 그러므로 공립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교회의 공적인 일에 속하며 교회 권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Law, vol. II/1, Angel Marzoa / Jorge Miras / Rafael Rodriguez-Ocana(eds.), Montreal: Wilson & Lafleur, 2004, p.455.

13) Cf. Luis Navarro, “Le forme tipiche di associazione dei fedeli”, *Ius Ecclesiae* 11(1999), 790.

14) Cf. Paolo Giuliani, *La distizione fra associazioni pubbliche e associazioni private dei fedeli n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Pontificia universita Lateranense, 1986, p.215.

15)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 II/1, Angel Marzoa / Jorge Miras / Rafael Rodriguez-Ocana(eds.), Montreal: Wilson & Lafleur, 2004, p.500.

16) Cf. *Comm.* 12(1980), pp.107-109.

1.2. 본성상 권위에 유보된 목적

교회법 제301조 1항을 보면 본성상 권위에 유보된 목적에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 교리 전수, 공적 경배 증진, 그 밖에 본성상 권위에 맡겨진 기타의 목적들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의 교회법 학설에서는 그 기타의 목적으로 교회 일치 목적, 영혼의 돌봄, 제도적 애덕 활동, 성품 행사 등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은 거룩한 목자의 책임인 교도 직무 및 성화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수장으로서의 직분과 같은, 권위에 고유한 일부 기능은 신자 단체가 추구할 수 없다.¹⁷⁾ 교회의 삼중 직무 중 통치 직무는 신자 단체가 교회 권위를 도우며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본성상 권위에 맡겨진 기타의 목적들은 아직 법전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교 교리 전수와 공적 경배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다.

1.2.1. 그리스도교 교리 전수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수하는 행위는 모든 신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다.¹⁸⁾ 여기서 문제는 이 기능이 수행되는 방식에 있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권위의 임무이기에, 교회 권위만이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수하는 것을 맡길 수 있다. 사립 단체에서도 그리스도교 교리 전수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이 활동은 교회의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며,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단체의 이름으로 수행된다. 평신도가 한 개인으로서 교리를 가르칠 때 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¹⁹⁾

17)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57.

18) 참조: 교회법 제774조 1항.

19)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55.

1.2.2. 공적 경배 증진

법전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공적 경배에 대해 몇 가지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²⁰⁾ 공적 경배는 직무 사제적 및 목자들의 권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 사제직을 지닌 신자들도 각자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화 임무에서 그들 자신의 고유한 몫을 담당한다. 교회의 권위와 그 밖의 모든 신자는 이처럼 공적 경배를 증진할 수 있다. 그런데 공립 단체에서 공적 경배와 관련된 행위는 ‘본성상 교회의 권위에 유보되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권위의 의사이든 그 밖의 다른 신자들의 의사이든 간에, 단체에서 공적 경배를 증진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그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로써 권위는 단체의 그러한 행위의 보증인이 된다.²¹⁾

1.3. 본성상 교회의 권위에 유보되지 않는 목적

교회법 제301조 2항에 따르면 공립 단체는 본성상 교회의 권위에 유보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도 설립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그 목적은 영적이어야 하며 개인이 주도해서는 그 목적 달성이 충분히 배려되지 아니해야 한다. 집단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단체가 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위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한다.²²⁾

권위가 판단할 때 신자들이 자신의 교회 사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권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 가장 시급하거나 매우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를

20) Cf. *Ibid.*, p.456.

21) Cf. *Ibid.*, p.456.

22) Cf. *Ibid.*, p.457.

만들 수 있다. 그 전에 권위는 이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신자들이 사립 단체를 만들어서 이와 관련된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제안하거나 고무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²³⁾ 권위에 유보되지 않는 목적의 영역에서 권위는 주도적이기보다 되도록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²⁴⁾

2. 사립 단체

2.1. 본성상 교회 권위에 유보되지 않는 목적

교회법 제301조는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설립되는 공립 단체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중 1항에서 제시하는 목적들은 본성상 교회 권위에 유보되는 것들이고, 이는 공립 단체만이 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298조 1항에서 본성상 교회의 권위에 유보되는 목적들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들은 사립 단체에서 추구할 수 있다.

교회 권위에 유보된 목적은 그렇지 않은 목적에 비해 교회 권위가 훨씬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²⁵⁾ 그러므로 공립 단체는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를 받는다.²⁶⁾ 그런데 만약 사립 단체도 교회 권위에 유보된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역시 공립 단체처럼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가 필요하게 된다. 사실 사립 단체는 공립 단체보다 신자의 결사권을 더 잘 누릴 수 있는데,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를 받게 되면 그러한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²⁷⁾ 그러면 당연히 사립 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된다.

23) Cf. *Ibid.*, pp.457-458.

24) Cf. *Ibid.*, p.458; “사실상 ‘교회 권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교회 권위와 함께’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Paolo Giuliani, *op.cit.*, p.220.

25)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5.

26) 참조: 교회법 제315조.

27)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5.

2.2. 교회 내 단체로서의 목적

사립 단체는 자기 단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행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행사하지 않고²⁸⁾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러나 사립 단체의 사명이 교회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의 사립 단체도 교회 내 단체이며, 교회법 제298조 1항에 명시된 교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 내 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 단체가 교회에 다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목적을 수행한다고 해도, 그러한 단체의 문제는 교회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²⁹⁾

2.3. 신자들의 의지

신자 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목적 중에 애덕 사업이나 현세 질서와 더 관련된 목적들은 시민 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원래 모든 인간에게는 결사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신도는 신자로서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기에, 교회와 관련된 단체에서만 아니라 시민 단체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³⁰⁾

신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를 구성할 때, 교회법적 단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민 단체를 만들 것인지의 결정은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교회 권위가 그들에게 교회법적 단체만을 만들라고 강요하며 교회법적인 법률상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³¹⁾ 만약 그렇게 강요한다면 그들이 현세적 영역에서 가지는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³²⁾ 순전히 교계의

28) Cf. Jose A. Fuentes, "Private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 II/1, Angel Marzoa / Jorge Miras / Rafael Rodriguez-Ocana(eds.), Montreal: Wilson & Lafleur, 2004, pp.530-531.

29) Cf. *Ibid.*, p.531.

30)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2.

31) Cf. *Ibid.*, p.443.

32) 참조: 교회법 제227조;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3.

명령을 받으면서 종속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³³⁾

가톨릭 신자 중에 앞서 언급한 목적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목적과 관련된 교회의 교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에 대한 교도권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은 적절한 도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러한 시민 단체를 설립하거나 그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거나 냉담 중인 신자는 교회법적 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거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단체 활동의 대상이 되기를 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³⁴⁾

이처럼 단체를 구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자들의 의지이지만, 교회의 관할권자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신자들에게 어떤 신자 단체를 장려하거나 추천할 수도 있다. 이때 교회 권위는 단체의 목표와 활동에 근거해서 어떤 면이 존경받을 만한지를 잘 평가하며 권고해야 한다.³⁵⁾

제2장 단체의 설립

1. 공립 단체

1.1. 설립권자

교회법 제301조 3항과 제116조³⁶⁾에 따라 모든 공립 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다.³⁷⁾ 이처럼 공립 단체의 설립은 교회

33)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3.

34) Cf. *Ibid.*

35) Cf. *Ibid.*, pp.443-444.

36)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497.

37)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58; Cf. *Comm.* 15(1983), p.85 and 17(1985), p.229
을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497에서 재인용.

권위의 전적인 권한이지만³⁸⁾ 단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³⁹⁾ 그러므로 공립 단체의 구성은 교계의 의지와 신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복합적인 행위이다. 교계가 신자들이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단체이든 법적 존재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⁴⁰⁾

공립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는 제31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보편적이거나 국제적인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는 성좌(혹은 ‘사도좌’)이다.⁴¹⁾ 설립 자체로 전국에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국가적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는 그 지역의 주교회이다.⁴²⁾ 교구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는 그 지역의 교구장 주교이다.⁴³⁾ 단체의 설립권자는 그가 설립한 단체의 성격에 따라 통치⁴⁴⁾나 감독에 대한 관할권자로서의 권한을 갖는다.⁴⁵⁾

1.1.1. 성좌

성좌에는 여러 부서가 있다. 보편적이거나 국제적인 단체를 설립할 때 그중 관련된 곳이 관할 부서가 된다.⁴⁶⁾ 국가적 단체가 여러

38) Cf. Luigi Chiappetta, *op.cit.*, p.403(171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교회의 모든 권한은 하느님 백성에 봉사하기 위한 직무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김효석, 「가톨릭교회의 통치권 이해: 현행 법전 제129~144조를 중심으로」, 『사목연구』, 33(2014), 가톨릭대학교사목연구소, 179쪽.

39)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58.

40) Cf. Luis Navarro, “Le forme tipiche di associazione dei fedeli”, 790~791.

41) 참조: 교회법 제312조 1항 1호.

42) 참조: 교회법 제312조 1항 2호.

43) 참조: 교회법 제312조 1항 3호.

44)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Cf. Velasio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Vincenzo Mosca(ed.),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p.128.

45) 그가 설립한 공립 단체만이 아니라, 그의 관할권 아래 있는 사립 단체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정관의 승인 및 인준, 회장 및 담당 사제 임명, 교회 영적 고문의 추진, 재정 보고 제출받음, 사법인 부여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491.

국가에서 확장되고 운영되어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면 보편적이거나 국제적 단체로 설립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성좌의 교령이 필요하다.⁴⁷⁾

1.1.2. 주교회의

주교회의는 국가적 단체의 설립권자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영토 전체 또는 대부분에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국가적인 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교회의에서 설립하거나, 사법인을 부여하거나, 정관을 승인하거나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적 단체는 교구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국가적 단체가 되기도 한다.⁴⁸⁾

주교회의는 일반적으로 통치권이 없다. 다만 교회법 제4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치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단체를 설립할 때와 일부의 경우 규범을 제정하고 지도할 때 통치권이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감독권은 없다. 일반적으로 감독은 교구장 주교가 한다. 그 밖에 주교회의에서는 원래의 기능인 자문을 할 때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⁴⁹⁾

1.1.3. 교구장 주교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 내 단체를 설립할 수 있지만, 교구장 직무 대행은 할 수 없다.⁵⁰⁾ 또한 교회법 제381조 2항에 따라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는 이들인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 서리구장은 관할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⁵¹⁾ 신자 단체를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⁵²⁾

46) Cf. Luis Navarro, *op.cit.*, p.492.

47) Cf. Luigi Chiappetta, *op.cit.*, pp.404-405(1721).

48)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p.493-494.

49) Cf. Jose A. Fuentes, *op.cit.*, pp.547-548.

50)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494.

51) "지역적 기준은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관할권자를 정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의 특전에 의해 설립권이 다른 권위에 유보된 단체들을 설립할 수 없다.⁵³⁾ 그러나 사도좌의 특전에 의해 설립되는 단체나 그 단체의 분회를 교구 내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⁵⁴⁾ 사실 사도좌의 특전과 관계 없이 그 교구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분회의 유효한 설립을 위해서는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가 요구⁵⁵⁾되기 때문이다.⁵⁶⁾ 따라서 국가적이거나 국제적인 단체가 새로운 교구에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할 때도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⁵⁷⁾

1.2. 공법인

교회법 제313조와 제116조 2항에 따라 공립 단체와 공립 단체들의 연합회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령 자체로 법인격을 부여받아 공법인으로 성립된다. 이 교령은 공립 단체를 설립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해야 한다.⁵⁸⁾ 또한 사립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교령⁵⁹⁾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이 교령에 따라 공법인으로 성립되는 공립 단체가 설립되고 그 단체의 정관이 정식으로 승인⁶⁰⁾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⁶¹⁾

지만, [...] 속인적인 관할 구조에서도 동등하게 관할 권위를 찾을 수 있다.” *Ibid.*, p.494.

52) 설립과 함께 신자 단체를 승인하고 그 단체의 정관을 인준할 권한도 가진다. Cf. *Ibid.*, p.494.

53) Cf. Luigi Chiappetta, *op.cit.*, p.403(1720).

54) Cf. *Ibid.*, p.405(1722).

55) “교구장 주교는 수도회나 선교회가 받은 은사를 식별하고 돌볼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는 교구장 주교의 본래적 사목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김효석, 『봉헌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의 설립을 위한 교구장 주교의 책임과 역할』, 『사목연구』, 34(2015), 가톨릭대학교사목연구소, 182쪽.

56) 참조: 교회법 제312조 2항.

57) Cf. Luis Navarro, *op.cit.*, p.495.

58) 참조: 교회법 제51조;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59.

59) 참조: 교회법 제322조 1항.

60) 참조: 교회법 제314조.

61) Cf. Luis Navarro, *op.cit.*, p.459.

관할권자에 의한 정관의 승인은 법인격의 취득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⁶²⁾ 그러므로 공립 단체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미리 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9조 3항에서는 정관의 인준⁶³⁾에 대해 언급하는데, 법인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정관의 인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준(recognitio)은 ‘검사’의 뜻이 강하고 승인(approbatio)은 ‘인정’의 뜻이 강하므로,⁶⁴⁾ 승인이 인준보다 권위의 개입 권한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체가 설립되고 승인된 정관으로 운영되다 보면 그 정관을 변경해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단체의 설립권이 있는 관할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변경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당연히 관할권자의 승인 이후이다.⁶⁵⁾

2. 사립 단체

2.1. 사적 협정

모든 신자 단체의 목적인 교회법 제298조 1항에 언급된 목적 중에 공립 단체의 목적인 제301조 1항의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신자들은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단체들을 결성할 자유가 있다.⁶⁶⁾ 여기서 협정이라는 계약은 단체에 필수적이다.⁶⁷⁾ 협정이 존재하는 한 단체도 존재하는데,⁶⁸⁾ 이 계약이 깨지면

62) 참조: 교회법 제117조;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01; Cf. Luigi Chiappetta, *op.cit.*, p.405(1725).

63) 이에 대해서는 본고 제2장의 ‘2.2. 교회 관할권자의 정관 인준’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64) 참조: 정진석, 『교회법해설』, 제2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0, 650쪽.

65)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p.501~502.

66) 참조: 교회법 제299조 1항.

67)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6.

68) Cf. Javier Hervada, *Pensamientos de un canonista en la hora presente*, Pamplona: Servicio de Publicaciones de la Universidad de Navarra, 1989, p.174를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6에서 재인용.

단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⁹⁾

협정이 있기 전까지는 성령의 은사인 카리스마가 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 뜻을 함께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는 아직 단체라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협정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설립자가 받은 카리스마를 미래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하게 한다.⁷⁰⁾ 이러한 설립 협정과 함께, 법률 행위⁷¹⁾의 유효성 및 적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단체 구성의 증거가 될 서면 설립 문서에서 충족된다.⁷²⁾

2.2. 교회 관할권자의 정관 인준

사립 단체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 관할권자의 정관 인준이 필요하다.⁷³⁾ 관할권자가 단체의 정관을 인준하는 것은 그 단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행위이다.⁷⁴⁾ 단체 구성 중에 교회의 본질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신자 단체로 설립되지 못하며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⁷⁵⁾

더욱이 교회에 반하는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려는 때에도 그 행위는 무효가 되며 책임자는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⁷⁶⁾ 교회를 거슬러 음모하려는 단체를 조장하거나 주관하면 금지 제재⁷⁷⁾로 처

69)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6.

70)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6.

71) 참조: 교회법 제124조~제126조.

72)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6.

73) 참조: 교회법 제299조 3항.

74)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p.447~448; Cf. Luis Navarro, “Le forme tipiche di associazione dei fedeli”, 795.

75)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8.

76) Cf. *Ibid.*, p.448.

77) 금지 제재는 교회의 친교 안에 머물러 있으나 성사와 준성사의 거행과 수령을 금지하는 형벌이다. 금지 제재는 선고 처벌에 속하고 의무적이다. 참조: 한영만, 『가톨릭교회 형법』,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2, 85쪽, 171쪽.

벌받는다.⁷⁸⁾ 또한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고 정당한 형벌로 처벌받는다.⁷⁹⁾ 어떤 단체가 교회의 일치와 친교 즉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⁸⁰⁾를 위배한다면, 그 단체는 교회 내 단체가 될 수 없고 그 행위는 교회 내 권리 행사가 될 수 없다.⁸¹⁾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 단체를 교회에서 인정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⁸²⁾ 물론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아직 정관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인 사실상의 단체(*Associatio de facto*)⁸³⁾ 역시 결사권의 결실로 인한 것이다.⁸⁴⁾ 이러한 단체에도 친교의 유대가 있기에, 회원들이 각자 개인으로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범위에서 권위의 통치와 감독에 종속된다. 그러므로 정관의 인준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며, 정관의 인준을 반드시 요청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⁸⁵⁾

그러나 단체는 교회 권위의 공식 인정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 권위가 단체의 교회 자격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를 요구할 때가 그러하다. 또한 권위와 단체 간

78)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8.

79) 참조: 교회법 제1374조; 가입한 자를 처벌하려면 그 단체가 교회를 음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기를 원했어야 한다. 그를 의무적으로 처벌은 하되 그에게 미확정적인 정당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참조: 한영만, 『가톨릭교회 형법』, 171쪽.

80) 참조: 교회법 제205조.

81)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8.

82) Cf. *Ibid.*, p.448.

83) “이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아직 교구장 주교로부터 어떤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의 모임을 위한 정관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보다 뚜렷이 하여 정관을 만들고, 같은 지향을 가진 회원들을 모집하여 교구 소속 사립 단체로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효석, 앞의 글, 189쪽.

84) 참조: 교회법 제215조;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8; 교회법 제215조와 제299조 1항에서 명시된 결사의 권리 덕분에 신자들은 교회 권위의 어떤 허가 없이도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를 세울 수 있다. 물론 제301조 1항에 명시된 목적들은 제외된다. Cf. Luigi Chiappetta, *op.cit.*, p.393(1686).

85)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p.448-449.

의 관계를 제도화해야 할 때, 아니면 단체의 교회적 성격을 선언함으로써 그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논쟁을 불식시켜야 할 때도 그 예에 해당할 수 있다.⁸⁶⁾ 단체가 홍보 등의 이유로 권위로부터 칭찬, 추천, 또는 ‘가톨릭’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원할 때도 요청할 수 있다.⁸⁷⁾

이를 위해 법전은 정관 인준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⁸⁸⁾ 관할권자는 정관 인준을 할 때 그 정관이 법률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고, 신앙과 관습과 교회 규율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⁸⁹⁾ 또한 그 단체의 목표가 적법하고 신자 단체가 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제공되는 수단이 원칙적으로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지도 봐야 한다.⁹⁰⁾

권위는 정관을 검토할 때 교회 자격의 필수 요건에 위배되는 요소를 발견하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⁹¹⁾ 또한 정관에서 일부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단체에 일부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⁹²⁾ 그러나 권위 스스로 알아서 정관을 수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권위가 단체를 돌보는 행위에는 단체 스스로 분별해야 하는 것을 대신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권위는 어떤 행위를 승인할지 말지, 아니면 잠시 보류할지에 관한 권한만 있다.⁹³⁾ 그래도 판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구하고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⁹⁴⁾

86) Cf. *Ibid.*, p.449.

87) Cf. *Ibid.*, p.449; 권위의 선언은 교회 공동체의 다른 신자들에게도 전달된다. 그들에게는 어느 단체가 실제로 교회 단체인지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Cf. Luis Navarro, “Le forme tipiche di associazione dei fedeli”, 795.

88) Cf. *Comm.* 15(1983) p.83을 Luis Navarro, “Common Norms”, p.449에서 재인용.

89) Cf. *Ibid.*, pp.449-450.

90) Cf. *Comm.* 15(1983), p.83을 *Ibid.*, p.450에서 재인용.

91) Cf. *Ibid.*, p.451.

92) Cf. *Ibid.*, p.451; 권위가 단체의 정관 중 교회의 필수 요건에 위배되는 요소가 아니라 단지 일부 측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정을 제안하는 정도라면, 단체가 이를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교회법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Cf. Luis Navarro, “Le forme tipiche di associazione dei fedeli”, 795.

93)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51.

94) 참조: 교회법 제50조; 권위는 이에 대한 교령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증

관할권자는 정관을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할지 거절할지에 대해 적어도 요약된 형식으로 그 동기를 명시한 교령을 서면으로 내려야 한다. 만약 관할권자가 정관의 인준을 거절하면 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는 보호될 수 없고 그 어떠한 내용도 무효가 된다.⁹⁵⁾ 이때 단체는 소원⁹⁶⁾을 할 수 있다.⁹⁷⁾ 물론 소원 이전에 교령을 제정한 권위와 협의하여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⁹⁸⁾ 행정 소원은 권위와 단체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교령이 발령되기 전에 권위와 단체는 상호 협의⁹⁹⁾를 충분히 해야 한다.

거를 수집하고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물론 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는 행위는 ‘될 수 있는 대로’(quantum fieri potest)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자유재량에 맡겨졌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리 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령을 내리면 그 교령은 행정 행위의 합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참조: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안드레아 다우리아, 『일반 규범』, 김효석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8, 218-219쪽.

95)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51.

96) 여기에서의 소원은 행정 소원이다. 정관 인준에 대해 관할권자가 내린 교령이 개별 행정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행정 소원은 어떤 행정 행위를 발한 교계적 장상 앞으로 그것의 합법성과 효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행정 소원은 다른 말로 위계적 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 소원을 하게 되면 교령 제정자의 장상에게 제기해야 한다. 물론 소원은 교령의 제정자 앞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그는 이것을 즉시 위계적 관할 장상에게 이송해야 한다(참조: 교회법 제1737조 1항). 교령의 제정자는 최소한 교구장 주교이거나 법률상 그와 동등시되는 자이다. 그의 위계적 장상은 성좌 관할 부서이다. 참조: 한영만, 『가톨릭교회 소송법』,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3, 441-448쪽.

97) 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교령의 제정자에게 그 교령의 취소나 정정을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청구는 교령이 합법적으로 통지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참조: 교회법 제1734조;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51.

98) 참조: 교회법 제1732조 1항; 참조: 한영만, 『가톨릭교회 소송법』, 450쪽.

99) “공동 합의성”의 강화는 과정과 대화를 중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주의 깊게 듣는 일이다. 교회 안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든 이의 신앙 증거가 서로 교류하면서 성령 안에서 복음이 한목소리로 선포되어야 한다. 공동 합의의 과정에서 교회가 개별 교회의 다양성, 교회 내 공동체의 다양성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 안에 일치성을 이루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발생한다.” 김종훈, 「평신도 회년: 정체성 회복을 위한 평신도의 해방을 향하여」, 『신앙과 삶』, 제38호(2018), 부산가톨릭대학교출판부, 18-19쪽.

2.3. 법인격

교회의 사립 단체는 정관 인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상의 단체와 정관을 인준받은 단체, 그리고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인 사법인¹⁰⁰⁾으로 나눌 수 있다.¹⁰¹⁾ 단체는 법인격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¹⁰²⁾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⁰³⁾ 그러나 단체는 법인이 됨으로써 풍부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주체로 구성된다.¹⁰⁴⁾

사립 단체는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에 의해서만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¹⁰⁵⁾ 사립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회 관할권자의 정식 교령이라는 권위의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다.¹⁰⁶⁾ 이 정식 교령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의 승인¹⁰⁷⁾을 받아야 한다.¹⁰⁸⁾

교회 관할권자는 모든 사정을 숙고하여 실제로 유익한 목적을 추구하고 또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리라고 예견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신자 단체가 아니면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¹⁰⁹⁾ 관할권자가 사립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거절할 때는 정관을 인준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령을 발령한다. 법인격 요청이 거부되면 단체는 정관 인준을 거절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복하여 소원할 수 있다.¹¹⁰⁾

100) 정관을 인준받은 단체와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는 ‘신자들의 교회법적 단체’이다. 즉 교회 내 단체라는 뜻이다. Cf. Luis Navarro, “Le forme tipiche di associazione dei fedeli”, 794.

101) Cf. Luigi Chiappetta, *op.cit.*, p.394(1689).

102) Cf. Jose A. Fuentes, *op.cit.*, p.534.

103) Cf. Luis Navarro, *Diritto di associazione e associazioni di fedeli*, Milan: Giuffrè, 1991, pp.85-87을 Jose A. Fuentes, “Private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34에서 재인용.

104) Cf. *Ibid.*, p.534.

105) Cf. *Ibid.*, p.534.

106) Cf. *Comm.* 12(1980), p.125 and 21(1989), p.141을 Jose A. Fuentes, “Private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p.534-535에서 재인용.

107)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4. 정관의 승인’ 부분을 참고.

108) Cf. Jose A. Fuentes, *op.cit.*, p.535.

109) 참조: 교회법 제114조 3항.

2.4. 정관의 승인

교회법 제322조 2항을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관할권자가 단체의 정관을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장인 제2장의 ‘2.2. 교회 관할권자의 정관 인준’에 나왔듯이, 제299조 3항에서는 관할권자가 단체의 정관을 ‘인준’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인준’은 단체가 결사의 권리에 대한 특징적인 징후를 보이는지와 단체에 교회적인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단체의 목적 및 그 수단을 인정하기 위한 권위의 통제 행위일 뿐이다. 그것은 일종의 ‘문제 없음’(nihil obstat)이다. 반면에 정관에 대한 ‘승인’은 그 이상의 것을 수반한다. 정관의 승인에 따라 권위는 더 분명히 단체에 관여하게 된다.¹¹¹⁾

사립 단체에서 권위는 ‘후견인 감독’으로 묘사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 행위를 수행한다. 교계가 사립 단체에 후견인 감독을 하는 목적은 그 단체의 정당함 혹은 적법함(legality)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공립 단체에서 권위는 ‘교계적 감독’으로 표현될 수 있는 특정한 책임이 있다.¹¹²⁾ 왜냐하면 공립 단체는 교계로부터 특정한 사명을 받는 한도 내에서¹¹³⁾ 그 사명과 관련하여 교계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322조 2항에서 사립 단체를 위해 사용된 ‘승인하다’(prōbo)라는 용어는 제314조에서 공립 단체를 위해 사용된 ‘승인’(approbatio)이라는 용어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¹¹⁴⁾ 라틴어 동사 prōbo의 명사형은 probatio인데 그 뜻에는 ‘시험, 시련, 인가, 승인’ 등이 있다.¹¹⁵⁾ 그리고 approbatio의 뜻에는 ‘승인, 증명, 출판 허가’ 등이 있다.¹¹⁶⁾ 교회법 개정 과정에서 한 위원은 사립 단체를 위한 조항인

110) Cf. Jose A. Fuentes, *op.cit.*, p.536.

111) Cf. *Ibid.*, pp.536-537.

112) Cf. *Ibid.*, p.537.

113) 참조: 교회법 제313조.

114) Cf. Jose A. Fuentes, *op.cit.*, p.537.

115) 참조: 가톨릭대학교출판부, 『라틴-한글 사전』, “probatio”, [https://dict.naver.com/lako-dict/#/entry/lako/741b822754ad43039957a41dcb3f1fe\(2023.05.18.\)](https://dict.naver.com/lako-dict/#/entry/lako/741b822754ad43039957a41dcb3f1fe(2023.05.18.)).

제322조 2항의 초안 초기에서 정관의 승인을 뜻하는 ‘statuta approbata’가 ‘statuta probata’로 변경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변경은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자들의 결사권을 강조하기 위해 권위의 개입에 대한 법적 효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¹⁷⁾ 교회의 권위가 단체에 얼마나 더 관여하는지에 따라 ‘*aprobátio*’ ‘*probátio*’ ‘*recognítio*’(검토·인준)라는 단어를 그 자리마다 알맞게 사용하여 조금씩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제3장 통치 및 운영¹¹⁸⁾

1. 공립 단체

1.1. 교회 권위의 감독

공립이든 사립이든 신자들의 모든 단체는 교회 권위의 통치와 감독을 받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감독은 통치 기능의 한 측면을 구성한다.¹¹⁹⁾ 그러나 감독과 통치가 각각 단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¹²⁰⁾ 통치는 단체 자체가 권위에 직접 종속된다는 것을 드러낸다.¹²¹⁾ 반면에 감독은 단체들에서 신앙과 도덕이 온전히 보

116) 참조: 가톨릭대학교출판부, 『라틴-한글 사전』, “*aprobátio*”, https://dict.naver.com/la_kodict/#/entry/lako/4f9d373be5a2488c889ca8ad243e0451 (2023.05.18.).

117) Cf. *Comm.* 12(1980), p.118 and 18(1986), p.238을 Jose A. Fuentes, *op.cit.*, p.537에서 재 인용.

118) 원래 교회법 석사 청구논문에는 이 장 앞에 ‘제4장 단체의 구성(입단, 임원, 탈퇴)’ 부분이 있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했다.

119)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73.

120) Cf. *Ibid.*, p.473; 그런데 실제로 단체에 이루어지는 통치와 감독은 시간상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종종 연결된다. 예를 들어, 정관 인준은 감독 기능인데 그 결과로 단체를 인정하는 통치 기능이 수반된다. 또한 단체에 대해 감독 행위를 한 결과로 단체를 폐쇄하는 통치 행위가 이루어진다. 단체가 신심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감독할 때도 통치 행위를 수반할 수 있다. Cf. *Ibid.*, p.474.

121) Cf. *Ibid.*, p.473; “남들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

전되게 하고 교회 규율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부 기능이다. 교회 권위는 교회의 친교와 일치에 위해 신앙과 도덕, 그리고 교회의 규율이라는 세 가지 기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단체를 감독한다. 이 기능은 주로 단체 방문을 통해 수행되는데, 이때 방문은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 교회 권위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모든 단체를 방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¹²²⁾ 물론 공립 단체에 대한 감독의 범위가 사립 단체보다 더 넓다.¹²³⁾

모든 신자 단체는 성좌의 감독에 예속된다. 그리고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모두 그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한도만큼 교구 직권자의 감독에 예속된다.¹²⁴⁾ 그에 의해 설립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았어도, 또한 그가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았어도, 개별 교회의 목자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¹²⁵⁾

1.2. 정관

1.2.1. 정관의 개념

정관은 법규범에 따라 제정되는데¹²⁶⁾ 단체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규제하고 조직하는 규약이다.¹²⁷⁾ 이로써 단체의 목적, 구성, 통할 및 행동 방식이 규정된다.¹²⁸⁾ 정관이 있어야 그 단체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으며¹²⁹⁾ 모든 회원이 그 적용을 받는다.¹³⁰⁾ 임원진이 교체되거나 정관 자체를 개정한다고 해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

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사랑을 지녀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조안 키티스터, 『십계명 마음의 법』, 성찬성 옮김, 성바오로, 2008, 89쪽.

122)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73.

123) Cf. Luigi Chiappetta, *op.cit.*, p.398(1704).

124) 참조: 교회법 제305조 2항.

125)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74.

126) 참조: 교회법 제94조 1항.

127)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74.

128) 참조: 교회법 제94조 1항.

129)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67.

130) 참조: 정진석, 앞의 책, 615쪽.

치지 않는데, 모든 절차가 이미 정관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¹³¹⁾

정관은 교회 권위의 권한이 단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면서 단체의 자율성의 범위를 명시하기에 교회 권위의 행위에 대한 한계가 설정된다. 또한 정관은 다른 단체와 나머지 신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그 단체가 정관에 따르는 행동을 할 때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단체와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가 자신의 정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를 지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¹³²⁾

1.2.2. 정관의 내용

모든 단체에는 정관이 있어야 한다.¹³³⁾ 정관은 단체의 목적, 운영 및 자율성의 범위, 교회 권위와의 관계 같은 근본적인 측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¹³⁴⁾ 그러므로 단체는 적어도 정관에 단체의 목적 즉 사교적 목표, 본부 소재지, 통할(운영), 회원 가입 조건, 시대와 장소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르는 활동 방침을 규정해둬야 한다.¹³⁵⁾ 명칭은 시대와 장소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지향하는 목적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¹³⁶⁾ 가능하다면 민사적 효력도 달성할 수 있도록 민법상 유효한 형식, 즉 국가 규범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¹³⁷⁾

1.3. 단체의 운영에 대한 권리

합법적으로 성립된 단체는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 단체 자체에 관한 특별 규범을 제정하고 회합을 거행할 수 있으며, 회장,

131)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67.

132) Cf. *Ibid.*, pp.467-468.

133) 참조: 교회법 제304조 1항.

134)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68.

135) Cf. Luigi Chiappetta, *op.cit.*, p.397(1700).

136)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68.

137) Cf. Luigi Chiappetta, *op.cit.*, p.398(1701).

임원, 직원, 재산 관리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¹³⁸⁾ 이러한 권리들의 부여 및 인정은 신자들의 결사권에 근거한다. 결사권을 기초로 하여 합법적으로 단체를 성립한 신자들은 그 단체의 자율성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¹³⁹⁾

1.4. 단체의 자율성과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

단체에는 정관에 따라 그 성격에 부합하는 계획들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며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¹⁴⁰⁾ 공립 단체는 항상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 아래에 있으나,¹⁴¹⁾ 교회 권위가 공립 단체에 상급 지도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그 단체의 정당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¹⁴²⁾ 그러므로 상급 지도는 교회 권위가 단체를 직접 운영하는 행위가 아니다.¹⁴³⁾ 동일한 권위가 이미 정관을 승인함으로써 그 단체에 정당한 자치를 부여했기에, 이후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모순이다.¹⁴⁴⁾

단체는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에 기초를 둔 기능에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¹⁴⁵⁾ 예를 들면, 임명 및 해임에 대한 개입, 임원진 지명 가능성, 세습 재산에 대한 통제, 정관 승인과 그 변경에 대한 승인¹⁴⁶⁾ 등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 밖에도 권위는 필요하다면 상급 지도를 할 수 있는 다른 측면에 대한 규범도 설정할 수 있다.¹⁴⁷⁾

138) 참조: 교회법 제309조.

139)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82.

140) Cf. Luigi Chiappetta, *op.cit.*, p.406(1726).

141) 참조: 교회법 제315조.

142)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03.

143) 또한 상급 지도는 교회법 제305조의 감독 행위도 아니다. Cf. Luigi Chiappetta, *op.cit.*, p.406(1726).

144)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p.503~504.

145) Cf. *Ibid.*, p.504.

146) 참조: 교회법 제314조, 제317조~제319조.

147) Cf. Luis Navarro, *op.cit.*, p.504.

1.5. 재산 관리

공립 단체의 재산은 교회 재산이다.¹⁴⁸⁾ 교회의 재산은 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에 해당하는 법 규정(제1254조~제1310조)에 따라 취득되고 유지되며 관리되고 양도된다.¹⁴⁹⁾ 교회 권위는 공립 단체에 대해 법전 제5권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립 단체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재산을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 아래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¹⁵⁰⁾ 그런데 공립 단체의 세습 재산은 교회 재산에 속하므로, 정관에는 교회법 제319조와 함께 교회법 제5권에서 단체에 해당하는 법조문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법이 공립 단체의 재산에 교회법 규범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더욱 필요하다.¹⁵¹⁾

그 밖에도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자와 교구 직원자의 서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¹⁵²⁾ 또한 단체가 제3자와 계약하거나 채무를 변제(辨濟)할 때는, 교회의 통치권에 소속하는 것에 관해서도, 그 지역의 국법이 정한 규정들이 교회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하느님의 법에 반대되거나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하면 그렇지 않다.¹⁵³⁾ 그리고 단체가 합법적 지정으로 공법인의 고정 세습 자산을 구성하고 그 가치가 법으로 규정된 총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법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¹⁵⁴⁾ 또한 기록한 물건이 공법인에 속하는 것이면 오직 다른 교회 공법인에 의해서만 취득될 수 있고, 그 물건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않는 한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148) 참조: 교회법 제1257조 1항.

149) 참조: 교회법 제1254조 1항.

150) 참조: 교회법 제319조 1항, 제1257조 1항.

151)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16;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제1291조~1298조의 규정이 국가법보다 우선해야 한다.

152) 참조: 교회법 제1265조 1항.

153) 참조: 교회법 제1290조.

154) 참조: 교회법 제1291조.

부동산과 보배로운 동산 및 인적이나 물적 권리와 소권이 공법인에 속하면 30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린다.¹⁵⁵⁾

공립 단체는 해당 교회 권위에게 세습 재산 관리에 대한 연간 보고를 해야 하고,¹⁵⁶⁾ 단체가 받은 기부금¹⁵⁷⁾과 모금한 회사금¹⁵⁸⁾의 성실한 지출 보고도 해야 한다.¹⁵⁹⁾ 교회의 권위¹⁶⁰⁾는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¹⁶¹⁾ 관리하는 것을 감독할 뿐이다.¹⁶²⁾

2. 사립 단체

2.1. 사립 단체와 교회 권위의 관계

단체들은 주로 정관을 인준하거나 승인한 교회 권위에 종속된다.¹⁶³⁾ 또한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신자 단체는 교회 권위의 감독과 통치에 예속된다.¹⁶⁴⁾ 그런데 교회 권위에 대한 사립 단체의 종속성은 공립 단체의 종속성과는 다르다. 교회법 제323조에서 드러나는 사립 단체와 권위와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⁵⁾ 교회법 제321조에 나오듯이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자율성을

155) 참조: 교회법 제1269조~제1270조.

156) 참조: 교회법 제319조 1항, 제1287조 1항;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15.

157) 참조: 교회법 제1267조, 제1299조~1301조.

158) 참조: 교회법 제1265조 1항.

159) 참조: 교회법 제319조 2항.

160) 교구장 주교는 교구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관할에 속하는 공법인에게 알맞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교구에 본부가 있는 단체에 대해 신학교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참조: 교회법 제264조, 제1263조; 직권자는 교회 재산 관리를 위해 보편법과 개별법의 범위 내에서 특별 훈령을 발령해야 한다. 참조: 교회법 제1276조 2항; 공법인의 관리자가 태만한 경우 직권자는 간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 교회법 제1279조 1항.

161) 참조: 교회법 제1279조 1항.

162) 참조: 교회법 제1276조 1항, 제1279조 1항;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16.

163) Cf. Jose A. Fuentes, *op.cit.*, p.541.

164) 참조: 정진석, 앞의 책, 678쪽.

165) Cf. Jose A. Fuentes, *op.cit.*, p.541.

누리지만 권위의 감독 아래에 있고, 단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의 통치가 있다.¹⁶⁶⁾

2.1.1. 자율성

교회법 제323조의 1항과 2항에서는 모두 사립 단체의 자율성에 대해 언급한다. 더욱이 1항에서는 사립 단체에 관한 법조문 중 첫 번째인 제321조의 규범에 따라 사립 단체가 자율성을 누린다고 함으로써 사립 단체의 고유한 자율성을 명확히 보여 준다. 이처럼 제323조는 사립 단체의 자율성에 대해 확실히 하고 나서, 교회 권위의 단체에 대한 감독과 통치에 대해 알려준다. 따라서 제323조의 의도는 ‘사립 단체의 자율성’과 ‘이러한 단체에 대한 교회 권위의 감독과 통치’가 서로를 보완하고 또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데에 있다.¹⁶⁷⁾

단체의 자율성 보호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각 단체의 결사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보편적이고 특수한 법률을 통해서이고, 두 번째는 정관의 자율성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단체와 교회 권위는 대화로써 그 고유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또한 신자들 편에서는 친교(communio)가 필요하고, 권위 측에서는 친교에 봉사(diaconia)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위는 ‘단체에 속한 신자들의 자율성’과 단체가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봉사를 보여 주게 된다.¹⁶⁸⁾

교회 권위가 결사의 권리 행사를 규제해야 할 때가 있다.¹⁶⁹⁾ 이때 권위는 ‘자율성 즉 신자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공동선’¹⁷⁰⁾ 및

166) 참조: 교회법 제323조 1항; Cf. Luigi Chiappetta, *op.cit.*, p.414(1747).

167) Cf. Jose A. Fuentes, *op.cit.*, p.542.

168) Cf. *Ibid.*, p.542.

169) Cf. *Ibid.*, p.543.

170) “우리는 현대의 윤리적 문제들이 타인을 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된다. 자기 행복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장애물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타인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드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결과로 귀결된다.

‘힘의 분산을 방지하는 것’을 측정 도구로 삼아야 한다.¹⁷¹⁾ 단체의 사도직 수행이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하거나 단체들의 힘의 분산을 방지¹⁷²⁾하기 위해, 권위는 대화로써 그 단체가 더욱 적합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줄 만한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¹⁷³⁾

2.1.2. 사립 단체에 대한 교회 권위의 감독

교회 권위는 ‘각 단체의 고유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¹⁷⁴⁾ 사안마다 사립 단체의 특성과 해당 법률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¹⁷⁵⁾ 사립 단체도 공립 단체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교회 권위의 감독에 예속되므로,¹⁷⁶⁾ 권위에게는 단체를 감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방문 권한이 있다. 교회법 제30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단체는 ‘법과 정관의 규범을 따라’ 교회 권위의 방문을 ‘받아야 한다.’¹⁷⁷⁾ 그러므로 사립 단체도 법과 정관에 따라 권위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제397조 1항을 보면 법인격이 있는 단체는 교구장 주교의 정규 방문 권한에 예속된다.¹⁷⁸⁾ 그렇다면 사립 단체 중 법인격이 있는 사법인은 권위의 방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인격이 없는 사립 단체에 대한 권위의 방문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은 없다. 그러므로 이때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

이 안에서 인류 공동의 가치는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공동선이 설 자리는 없다.” 방종우, 「개인의 존재 안에서의 공동체성과 타자성: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제214호(2021), 광주가톨릭대학교, 116쪽.

171) Cf. Jose A. Fuentes, *op.cit.*, pp.542~543.

172) 여기서 ‘힘의 분산을 방지’한다는 것은 단체를 발전시킨다는 것이지 단체를 인정해 주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다. 단체가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권위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Cf. *Ibid.*, p.543.

173) Cf. *Ibid.*, p.543.

174) 참조: 교회법 제323조 2항.

175) Cf. Jose A. Fuentes, *op.cit.*, p.544.

176) 참조: 교회법 제305조 1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2018, 30항; Cf. Jose A. Fuentes, *op.cit.*, p.545.

177) 참조: 교회법 제305조 1항.

178) 참조: 교회법 제397조 1항.

다.¹⁷⁹⁾

2.1.3. 사립 단체에 대한 교회 권위의 통치

사립 단체의 운영은 각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인 신자들의 자치로 이루어진다.¹⁸⁰⁾ 그런데 이 자치는 관련되는 보편법의 영향을 받는다. 권위에 의한 통치는 하느님 경배와 사도직의 질서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들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의무에 달려 있다.¹⁸¹⁾

교회 권위로부터 명시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완전히 사적인 사실상의 단체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소속된 교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목자인 교구장 주교는 법 자체로 그 교구에 소속된 모든 신자에 대해 통치권¹⁸²⁾을 갖는다.¹⁸³⁾ 따라서 그러한 단체의 개인도 신자로서 교회 권위의 주의(*invigilo*)¹⁸⁴⁾와 돌봄(*cūro*)을 받는 감독(*vígilo*)에 예속되며 그 통할(*rēgo*)에도 교회법 규정대로 예속되기에,¹⁸⁵⁾ 교회에서 독립되어 완전한 자치를 누리는 신자들의 사립 단체도 교회 권위의 감독 및 통치와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정받은 사립 단체는 단체로서도 그 통할에 예속된다.¹⁸⁶⁾ 그러나 이 통치는 법전에 명시된 사항들 외에는 사립 단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¹⁸⁷⁾

179) Cf. Jose A. Fuentes, *op.cit.*, p.544.

180) 참조: 교회법 제321조.

181) Cf. Jose A. Fuentes, *op.cit.*, p.545.

182) 참조: 교회법 제391조, 제392조, 제394조.

183) Cf. Luigi Chiappetta, *op.cit.*, p.394(1690).

184) *invigilo*: 경계하다, 주의 깊게 돌보다, 염려하다, 마음을 쓰다. 참조: 가톨릭대학 교출판부, 『라틴-한글 사전』, “*invigilo*”, [https://dict.naver.com/lakodict/#/entry/lako/c2c8241b97874212824a0458e7b1e455\(2023.06.04.\)](https://dict.naver.com/lakodict/#/entry/lako/c2c8241b97874212824a0458e7b1e455(2023.06.04.)).

185) 참조: 교회법 제305조 1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공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친교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든 행동에도 영향을 줘야 한다. 사실 단체 자체가 친교의 표지이다. 참조: 「평신도 교령」, 18항; Cf. Jose A. Fuentes, *op.cit.*, p.530.

186) Cf. *Ibid.*, pp.545-546.

187) Cf. *Ibid.*, p.546.

법전은 사립 단체가 공립 단체처럼 운영되려는 그 어떤 모습도 보여 주지 않는다. 오히려 권위는 지도와 격려를 통해 사립 단체에 봉사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¹⁸⁸⁾

2.2. 사립 단체의 재산 관리

법전에서 사립 단체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제325조에 규정된다. 이 조항은 ‘사립 단체의 재산에 대한 자치’와 ‘교회 권위의 감독 책임’ 사이의 균형을 명시하고 있다.¹⁸⁹⁾

사립 단체는 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있어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유로이’ 행한다. 사립 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은 제325조와 제1257조 2항에 제시된다.¹⁹⁰⁾ 두 조항을 조합해 보면 사립 단체는 재산을 정관에 따라서 관리하라고 규제한다. 그리고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nisi expresse aliud caveatur) 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의 규범에 종속되지 않는다. 사립 단체의 재산은 교회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⁹¹⁾ 그러나 정관은 법전과 일치해야 하며, 따라서 법전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정관은 신자들의 유효한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교계의 책임성’을 간과할 수 없다. 교계와 단체 사이의 관계는 정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교계는 사립 단체의 행위에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단체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하고, 신심의 이유로 받은 재산의 관리와 지출에만 직접적으로 관여한다.¹⁹²⁾

2.2.1. 사립 단체의 재산에 대한 교회 권위의 감독

교회 권위가 사립 단체의 재산을 감독하는 이유는 그 재산이 단체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¹⁹³⁾ 이러한

188) Cf. *Ibid.*, pp.546-547.

189) 참조: 교회법 제325조 1항.

190) Cf. Jose A. Fuentes, *op.cit.*, pp.551~552.

191) 참조: 교회법 제1257조 1항; Cf. Luigi Chiappetta, *op.cit.*, p.416(1753).

192) Cf. Jose A. Fuentes, *op.cit.*, p.552.

감독을 책임지는 권위는 정관을 인준하거나 법인격을 부여한 권위이다. 물론 공립 단체에 대한 교회 권위의 감독에 대해 보편법에 확립시킨 조항들을 사립 단체에 적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사립 단체의 재산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 교회법 제325조의 의미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現) 법전의 일반적인 개정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19조와 제1287조에 따라 공립 단체에 요구되는 연간 회계 보고를 사립 단체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 단체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의혹이나 주장이 있는 경우에 권위는 회계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¹⁹³⁾

법전 제5권 중에는 사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다. 예를 들면, 먼저 제1280조에 따라 공법인만이 아니라 사법인에도 재산 관리자를 도와줄 재무 평의회나 적어도 2명의 고문이 있어야 한다. 이례적인 납부금에 관한 제1263조도 있는데, 교구장 주교는 재무 평의회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교구에서 매우 필요한 경우에 공법인들만이 아니라 자연인들과 사법인들에게도 그들의 수입에 비례하여 알맞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신학교를 위한 부담금에 관한 제264조도 있는데, 교구장 주교는 신학교를 위해 현금 외에 교구 내에 본부를 둔 사법인들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회사금만으로 유지하거나, 교회의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학생들이나 교원들의 기숙사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제외한다. 이러한 부담금은 전반적이어야 하고 부담자들의 수입에 비례하여야 하며 신학교의 필요에 따라 정해야 한다. 모금에 관한 제1265조도 있는데, 사립 단체도 소속 직원자와 교구 직원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신심이나 교회 시설이나 목적을 위해서도 모금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봉헌금에 관한 제1267조도 있는데, 사법인들도 그 장상들이나 관리자들에게 바쳐진 봉헌금은 그 법인에게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반대가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봉헌금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될 수 없고,

193) 참조: 교회법 제325조 1항.

194) Cf. Jose A. Fuentes, *op.cit.*, pp.554-555.

어떤 양식의 책무나 조건이 붙은 봉헌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자들이 바친 봉헌금은 오직 그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 비자치 신심 기금의 청산에 관한 제1303조 2항도 있는데, 비자치 신심 기금의 재산은 교구장 주교에게 소속된 법인에게 위탁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면 그 교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위한 특별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다만 설립자의 의사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법인 자체에 귀속된다. 법전 제5권에서 사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조항들의 내용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2.2.2. 신심의 이유로 받은 재산의 관리와 지출에 대한 교구 직권자의 권위

신심의 이유로 단체에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관리와 지출에 관한 것은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예속된다.¹⁹⁵⁾ 교회법 제1301조를 보면 직권자¹⁹⁶⁾는 생전 행위이거나 사인 행위이거나 모든 신심 의사의 집행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권자는 신심 의사가 이행되도록 방문을 하면서까지 감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며, 직권자 이외의 집행자들은 임무를 마친 후 그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직권자의 권리들에 반대되는 단서 조건이 유언에 첨부되면 마치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¹⁹⁷⁾ 그런데 이때 교구 직권자가 ‘그 재산이 관리되는 장소의 직권자’인지 아니면 ‘그 단체 본부의 직권자’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전통적으로는 신심의 이유로 유증을 하는 사람의 마지막 거주지의 직권자를 지목하는데, 제1413조 2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¹⁹⁸⁾

195) 참조: 교회법 제325조 2항, 제1301조.

196) 교회법 제1301조의 직권자는 교구 직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직권자를 지칭한다. Cf. Jose A. Fuentes, *op.cit.*, p.556.

197) 참조: 교회법 제1301조.

198) Cf. Jose A. Fuentes, *op.cit.*, p.556.

2.2.3. 법인격이 없는 사립 단체의 재산 관리

단체는 각 단체의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세습 재산으로 구성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민법과 교회법에서는 단체가 재산을 자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립 단체 중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있다. 정관 인준을 받은 단체와 사실상의 단체가 그러하다. 이런 단체는 재산의 소유권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각 회원의 재정적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그러하다.¹⁹⁹⁾ 또한 법인격이 없는 사립 단체의 재산과 관련되는 법조문 중에는 교회법 제113조 2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결국 그러한 단체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²⁰⁰⁾

제310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신자들이 공동 주인이자 공동 소유자²⁰¹⁾로서 합동으로 의무(채무)를 체결하고 권리를 취득하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²⁰²⁾ 단체가 이 권리와 의무를 수탁인, 즉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²⁰³⁾ 이로써 단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해결하고,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없는 상황에 대한 관리 문제도 해결한다. 교회는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현(現) 법전을 통해 신자들의 결사권과 이에 따르는 자율성을 보장하려 전례 없는 발걸음을 내디뎠다.²⁰⁴⁾ 그렇지만 민법

199) Cf. *Ibid.*, pp.552-553.

200) Cf. Luis Navarro, “Common Norms”, p.484.

201) 공동 소유(共同所有):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우리 민법에서는 공유(公有), 합유(合有), 총유(總有) 세 가지 유형을 인정하되 개인 소유권으로 분해가 가능한 공유를 가장 원칙적인 유형으로 인정한다.” 표준국어대사전, “공동 소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9c39a837ee747c38e162d20abd6103c> (2023.06.07.).

202) 총유(總有): “하나의 목적물을 여럿이 공동으로 가지는 공동 소유의 한 형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목적물의 관리나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며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각각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다. [...] 공동 소유 가운데 가장 집단적 색채가 강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총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0e34a861caf45afa660f534b62858bd> (2023.06.07.).

203) 참조: 교회법 제310조.

의 인정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 상황은 국가마다 다르기에, 이에 대하여 국가별로 주교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²⁰⁵⁾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법전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²⁰⁶⁾

제4장 단체의 해산과 청산

1. 공립 단체

1.1. 공립 단체의 해산

법인은 그 본성상 영구적이거나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 또한 백 년 동안 활동하기를 정지하면 소멸된다.²⁰⁷⁾

공립 단체의 폐쇄에 대한 교회법 조문은 제320조이다. 이 규범은 교회 권위가 공립 단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과감한 조치이다. 이 조항은 교회의 친교와 일치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기초한다. 교회의 친교와 일치가 교회 생활의 최고의 가치이므로, 권위는 자신의 관할 영역에서 신앙과 도덕 및 교회 규율에 어긋나는 것이 없도록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²⁰⁸⁾

204) Cf. Jose A. Fuentes, *op.cit.*, p.553.

205) Cf. Luis Navarro, *op.cit.*, p.487.

206)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명의 신탁”, [https://ko.dict.naver.com/entry/koko/e39b0e69bcb5403792e7cd0228f921e2\(2023.11.28.\)](https://ko.dict.naver.com/entry/koko/e39b0e69bcb5403792e7cd0228f921e2(2023.11.28.)).

207) 참조: 교회법 제120조 1항.

208)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p.518-519.

1.2. 공립 단체를 폐쇄할 수 있는 교회 권위

공립 단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교회의 모든 권위가 단체를 폐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²⁰⁹⁾ 성좌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오직 성좌에 의해서만 폐쇄될 수 있는데,²¹⁰⁾ 혹시 보편적이거나 국제적인 단체가 아니어도 그러하다. 그리고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가 세운 단체여도 마찬가지로 성좌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²¹¹⁾ 국가적인 단체는 그 단체를 설립한 주교회의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교구 단체는 그 단체를 설립한 교구장 주교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또한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동의 아래 사도좌의 유히로 수도회 회원이 설립한 단체들도 폐쇄할 수 있다.²¹²⁾ 만일 지역교회 직권자 자신이 설립하지 않은 단체를 감독하는 가운데 문제가 심각하여 폐쇄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자신이 폐쇄할 수는 없으나 그 단체의 관할권자에게 보고하여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²¹³⁾

1.3. 공립 단체의 폐쇄를 방지할 수 있는 교회 권위의 방안

단체의 폐쇄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므로 교회 권위는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단체가 교회의 신자 단체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일정 기간 수탁 대표를 활용하여 단체를 관리하거나, 임원진을 훈계하거나, 회장을 해임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정행위는 그 단체가 다시 교회의 친교로 돌아왔음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된다.²¹⁴⁾

209) Cf. *Ibid.*, p.519.

210) 참조: 교회법 제320조 1항.

211) Cf. Luigi Chiappetta, *op.cit.*, p.412(1742).

212) 참조: 교회법 제320조 2항.

213)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19.

214) Cf. *Ibid.*, p.519.

1.4. 공립 단체가 폐쇄되는 사유

공립 단체를 폐쇄할 만한 사유에는, 사립 단체의 폐쇄에 대해 명시한 교회법 제326조 2항의 내용처럼 교회의 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을 일으키는 등의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이다. 공립 단체는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기에 사립 단체의 폐쇄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제320조 1항에는 성좌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폐쇄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좌가 자신이 설립한 단체를 폐쇄하는 이유 역시 그와 같은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²¹⁵⁾

1.5. 단체 폐쇄 교령 발행

권위가 판단하기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단체를 교회의 친교로 되돌리려는 노력에도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권위는 행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회의 가르침이나 규율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신자들 사이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의 사실과 그 정도가 입증되도록 해야 한다.²¹⁶⁾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공적 행위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나 문서, 공식 발표 자료, 악의가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²¹⁷⁾ 분명히 이 단계에서 그 단체의 회장 및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²¹⁸⁾ 회장과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제로 해체하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회장과 상급 임원들의 의견은 결의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자문일 뿐이다. 회장과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합의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면담이나 우편으로 들어도 무방하다.²¹⁹⁾

절차가 완료되면 권위는 폐쇄 교령을 내린다. 폐쇄의 근거와 의

215) Cf. *Ibid.*, p.519.

216) Cf. *Ibid.*, p.519.

217) Cf. *Ibid.*, pp.519-520.

218) 참조: 교회법 제320조 3항.

219) 참조: 정진석, 앞의 책, 669쪽.

미에 비추어 볼 때, 권위는 사실상 교회에서 분리되어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따라서 단체의 회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이 들거나, 더욱이 그들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이전의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해도 이 결정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단체의 폐쇄 조치는 신자들을 위한 교회 권위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이다.²²⁰⁾

폐쇄 교령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단체를 폐쇄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들 즉 경고나 통첩 등을 했던 것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폐쇄를 초래한 이유를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단체 임원진의 의견을 들었으며 세습 재산의 청산을 포함하여 단체에 대한 폐쇄가 선포될 것이라는 점을 기입해야 한다.²²¹⁾ 주교회이나 교구장 주교가 단체 폐쇄 교령을 내리면 단체는 이에 대해 행정 소원을 할 수 있다.²²²⁾ 행정 소원 시 교회법 제1736조 2항의 ‘위계적 장상’은 명백히 성좌이며, 이 소원은 그 본성 자체로 집행정치의 효과를 낸다. 소원 중에 폐쇄 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시켰다가 이 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폐쇄된 단체를 다시 설립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³⁾

1.6. 해산된 단체 재산의 청산

단체가 해산되면 그 단체에 대한 재무 조사가 이루어진 후, 공법인인 공립 단체는 법과 정관에 따라 재산이 청산된다.²²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관 규범은 해산된 단체의 세습 재산이 누구에게 아니면 어디에 이전될 것인지를 규정하며,²²⁵⁾ 재산이 이전과 동일한 목

220)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20.

221) Cf. *Ibid.*, p.520.

222) 참조: 교회법 제1732조~제1739조; Cf. Luigi Chiappetta, *op.cit.*, p.412(1742).

223) Cf. *Comm.* 18(1986), p.236을 *Ibid.*, p.412(1742)에서 재인용.

224) 참조: 교회법 제123조;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20.

225) 거룩한 물건이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것이면 오직 다른 공법인에 의해서만 취

적으로 사용되도록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²²⁶⁾ 이 내용이 정관에 없으면 공법인의 재산과 소유권 및 부채는 즉시 상위 법인에 양도된다. 헌납자와 설립자의 의사와 해산된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기득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²²⁷⁾

2. 사립 단체

2.1. 사립 단체의 해산

교회법 제326조는 사립 단체의 해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인데, 이를 통해 사립 단체의 영구적인 존속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120조 1항에서 법인격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영속성의 원칙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단체의 영속성은 제1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의 회원이 남는 한 단체가 존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²⁸⁾

사립 단체가 소멸될 수 있는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²²⁹⁾ 먼저 정관에 규정된 방식²³⁰⁾과 관할권자의 폐쇄 교령²³¹⁾에 의해서다.²³²⁾ 그리고 법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유추해 볼 때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도 적용해야 하는 제120조에 따라, 법 자체로 단체가 백 년 동안 활동하기를 정지하면 소멸된다.²³³⁾

득될 수 있다. 참조: 교회법 제1269조.

226) 참조: 교회법 제1300조, 제1308조~제1310조;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20.

227) 참조: 교회법 제123조; Cf. Luis Navarro,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p.520.

228) Cf. Jose A. Fuentes, *op.cit.*, p.557.

229) Cf. *Ibid.*, p.557.

230) 참조: 교회법 제326조 2항; “단체가 해산할 경우를 정관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 정진석, 앞의 책, 687쪽.

231) 성좌, 그리고 정관을 인준하거나 승인한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가 이와 관련한 권한을 갖는다. Cf. Jose A. Fuentes, *op.cit.*, pp.559~560.

232) 참조: 교회법 제326조 1항.

233) 참조: 교회법 제120조 1항; Cf. Jose A. Fuentes, *op.cit.*, p.557.

2.2. 관할권자에 의한 단체의 폐쇄

사립 단체도 관할권자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²³⁴⁾ 그러나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를 폐쇄할 수 있는 권위의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²³⁵⁾ 공립 단체는 교회 자체만이 아니라 그 권위도 위태롭게 할 수 있기에 권한이 더 크다. 공립 단체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할 뿐이며, 그러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전적인 재량권을 권위에게 맡기고 있다. 반면에 사립 단체의 폐쇄 사유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²³⁶⁾ 바로 교회의 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이 될 때이다.²³⁷⁾ 단체의 활동이 이러한 해를 끼칠 때가 폐쇄의 이유라고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의 계획이나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단체에 손상을 끼친다고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폐쇄를 정당화할 수 없다.²³⁸⁾

공립 단체와 달리 단체를 폐쇄하기 전에 회장과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²³⁹⁾ 사립 단체의 폐쇄 결정에 대한 소원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집행정지의 효력에 대해서도 법전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공립 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²⁴⁰⁾

신자들의 단체가 폐쇄될 수 있다고 해서 결사의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사의 권리에 근거하여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그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신앙이나 교회 규율의 핵심이 위태로워지면 신자들의 기본권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진정한 결사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⁴¹⁾

234) 참조: 교회법 제326조 1항.

235) 참조: 교회법 제18조, 제120조, 제215조; Cf. Jose A. Fuentes, *op.cit.*, p.558.

236) Cf. *Ibid.*, p.558.

237) 참조: 교회법 제326조 1항.

238) Cf. Jose A. Fuentes, *op.cit.*, p.558.

239) Cf. Luigi Chiappetta, *op.cit.*, p.417(1757).

240) Cf. Jose A. Fuentes, *op.cit.*, p.558.

2.3. 관할권자의 또 다른 개입 가능성

권위가 이처럼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사립 단체를 폐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²⁴²⁾ 신자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권위의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²⁴³⁾ 물론 사립 단체도 교회 권위의 감독과 보살핌 및 통할에도 예속된다.²⁴⁴⁾ 따라서 단체의 활동에 대해 권위가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이 개입은 결사의 권리, 신자들의 친교, 그리고 교회의 일반적인 통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만약 권위가 재산에 대한 보고만 받다가 어떤 중간 과정도 없이 갑자기 폐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권위가 공립 단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행동과 사립 단체에 대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²⁴⁵⁾

2.4. 해산된 사립 단체 재산의 청산

사립 단체가 해산되면 그 단체의 재산은 법인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되어야 한다.²⁴⁶⁾ 따라서 정관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는데, 이를 정할 때는 단체의 기원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공립 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상급 법인에 귀속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두는 것이 좋다.²⁴⁷⁾ 다만 기득권과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²⁴⁸⁾

241) Cf. *Ibid.*, pp.558-559.

242) Cf. *Ibid.*, p.559.

243) 참조: 교회법 제18조; Cf. Jose A. Fuentes, *op.cit.*, p.559.

244) 참조: 교회법 제305조, 제323조.

245) Cf. Jose A. Fuentes, *op.cit.*, p.559.

246) 참조: 교회법 제123조, 제326조 2항; Cf. Jose A. Fuentes, *op.cit.*, p.560.

247) Cf. *Ibid.*, p.560.

248) 참조: 교회법 제326조 2항.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입법자가 신자들의 단체를 통해 신자들이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교회 행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의 제도적 세분화를 통해 신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자치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권위 감독의 범위를 구별하고 폐쇄의 절차 규정을 통해 단체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부 규범을 통한 단체의 생성과 활동의 제도적 성격을 연구하고 고려한다면, 신자들과 교계의 구성원들이 더 정확하고 적절하게 교회의 사명에 단체적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교회법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3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1.25.),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2. 교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3201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2018.

3. Communicationes

Communicationes 12(1980).

Communicationes 15(1983).

Communicationes 18(1986).

Communicationes 21(1989).

4. 단행본

Chiappetta, Luigi,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1(Libri
I - II), Francesco Catozzella / Arianna Catta / Claudia Izzi, et al.(eds.), Bologna:
EDB, 32011.

De Paolis, Velasio,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Mosca, Vincenzo(ed.),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Giuliani, Paolo, *La distizione fra associazioni pubbliche e associazioni private dei
fedeli n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Pontificia universita
Lateranense, 1986.

Hervada, Javier, *Pensamientos de un canonista en la hora presente*, Pamplona:
Servicio de Publicaciones de la Universidad de Navarra, 1989.

Navarro, Luis, *Diritto di associazione e associazioni di fedeli*, Milan: Giuffrè, 1991.

조안 키티스터, 『십계명 마음의 법』, 성찬성 옮김, 성바오로, 2008.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안드레아 다우리아, 『일반 규범』, 김효석 옮김, 가

톨릭대학교출판부, 2018.

정진석, 『교회법해설』, 제2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0.

한영만, 『가톨릭교회 소송법』,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3.

_____, 『가톨릭교회 형법』,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2.

5. 정기간행물

Navarro, Luis, “Le forme tipiche di associazione dei fedeli”, *Ius Ecclesiae* 11(1999), 771~797.

고준석, 「가톨릭본당에서의 평신도들의 유기적 협력: 역사-법률-사목적 접근」, 『종교연구』, 제57집(2009), 한국종교학회, 181~207쪽.

_____, 「본당과 교회운동의 관계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 제24호(2014), 한국가톨릭신학학회, 5~31쪽.

김종훈, 「평신도 희년: 정체성 회복을 위한 평신도의 해방을 향하여」, 『신앙과 삶』, 제38호(2018), 부산가톨릭대학교출판부, 1~22쪽.

김현조,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의 ‘구성’: 역사, 원리, 실제」, 『신학전망』, 제222호(2023), 광주가톨릭대학교, 69~121쪽.

김효석, 「가톨릭교회의 통치권 이해: 현행 법전 제129~144조를 중심으로」, 『사목연구』, 33(2014), 가톨릭대학교사목연구소, 177~210쪽.

_____, 「봉헌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의 설립을 위한 교구장 주교의 책임과 역할」, 『사목연구』, 34(2015), 가톨릭대학교사목연구소, 179~199쪽.

방중우, 「개인의 존재 안에서의 공동체성과 타자성: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제214호(2021), 광주가톨릭대학교, 96~130쪽.

전두병, 「20세기 교회 문헌에서의 평신도의 모습」, 『사목연구』, 42(2019), 가톨릭대학교사목연구소, 93~114쪽.

6. 사전 및 편집단행본

Fuentes, Jose A., “Private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 II/1, Marzoa, Angel / Miras, Jorge / Rodriguez-Ocana, Rafael(eds.), Montreal: Wilson & Lafleur, 2004, pp. 521~560.

Navarro, Luis, “Common Norms”,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 II/1, Marzoa, Angel / Miras, Jorge / Rodriguez-Ocana, Rafael(eds.), Montreal: Wilson & Lafleur, 2004, pp.440~489.

- _____, “Public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 II/1, Marzoa, Angel / Miras, Jorge / Rodriguez-Ocana, Rafael(eds.), Montreal: Wilson & Lafleur, 2004, pp.490-520.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라틴-한글 사전』, “*approbatio*”, <https://dict.naver.com/lakodict/#/entry/lako/4f9d373be5a2488c889ca8ad243e0451>(2023.05.18.).
- _____, “*invigilo*”, <https://dict.naver.com/lakodict/#/entry/lako/c2c8241b97874212824a0458e7b1e455>(2023.06.04.).
- _____, “*probatio*”, <https://dict.naver.com/lakodict/#/entry/lako/741b822754ad43039957a41dcba3f1fe>(2023.05.18.).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명의 신탁”, <https://ko.dict.naver.com/#/entry/koko/e39b0e69bcb5403792e7cd0228f921e2>(2023.11.28.).
- 표준국어대사전, “공동 소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9c39a837ee747c38e162d20abd6103c>(2023.06.07.).
- _____, “충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0e34a861caf45afa660f534b62858bd>(2023.06.07.).

[부 록]

신자들의 단체 실례(實例)

본 자료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단체명(2023년 12월 4일 현재)
공립 단체 (공법인)		
사립 단체	사법인	한국가톨릭 의료협회, 한국가톨릭 학교법인연합회,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 가톨릭 여성연합회, 가톨릭 영화인협회, 끊임없는 기도 모임, 서울대교구 가톨릭 다도회 등
	정관을 인준받은 단체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M.B.W. 한국공동체 추진봉사회, 마리아 사업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한국 레지오 마리아, 월드 와이드 매리지 앤 카운터 한국협의회, 전국가톨릭 경제인협의회, 한국가톨릭 교수협의회, 한국가톨릭 농민회협의회, 한국가톨릭 미술가협회, 한국가톨릭 성령새신 봉사자협의회, 한국가톨릭 스카우트,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협의회, 한국가톨릭 아동복지협의회,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전국협의회, 한국천주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 CLC, 한국가톨릭 작곡가협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아버지학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기사사도직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두선교단, 오더 오브 몰타 코리아, 예수살이공동체, 성서백주간, 서울대교구 하늘땅물벗,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체나폴로 봉사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협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서울대교구 가톨릭 약사회, 서울가톨릭 연국협회, 네오까떼꾸메나도 길,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등
		사실상의 단체

※ 공립 단체(공법인), 법인인 사립 단체(사법인), 정관을 인준받은 사립 단체, 사실상의 단체의 주요 특징

- 공립 단체(공법인):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설립되는데 이때 정관을

승인받아 법인으로 성립된다. 모든 공립 단체는 법인이다.

- **법인인 사립 단체(사법인):** 교회 관할권자가 아닌 신자가 설립하고,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아 법인이 된다. 실제로는 단지 단체가 국가법과 관련하여 법인격이 필요할 때 부여되기도 한다.
- **정관을 인준받은 사립 단체:** 교회 관할권자가 아닌 신자가 설립하고,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인준받아 ‘교회 내 단체’로 인정받은 단체인데, 관할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톨릭’의 명칭을 붙일 수 있다. 법인은 아니다.
- **사실상의 단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정관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아직 정관을 인준받지 않아 교회 안에서 신자 단체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그 회원이 각각의 신자로서 교회 권위 아래 있다.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그분 사랑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 교회는 특히 평신도와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역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신자들의 단체는 성령의 이끄심을 더 잘 받아들이고 신자들이 더 잘 참여할 수 있기 위해 매우 세심하게 입법화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신자와 교계의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신자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연구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신자들의 단체는 교회가 탄생한 초세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신자들은 결사의 권리에 대해 잘 몰랐어도 이를 누려왔고, 교회도 20세기에 들어 법적인 규범화를 이루어 나갔다. 마침내 교회는 신자들에게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가 있으며, 단체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도구라는 점을 선언했다. 또한 사도직 단체는 다양한 목적을 지니는데, 단체와 교계는 합당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고에서는 신자 단체를 소개하기 위해 단체의 목적, 설립, 통치 및 운영, 단체의 해산과 청산이라는 주제로 분류했는데, 현 법전에서 신자 단체를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로 나누었기 때문에 주제마다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여된 천부적 권리인 결사의 자유가 실현되는 단체를 통하여 교회의 목적 실현에 신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복잡한 유기체인 단체의 구성과 단체가 맞이하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다. 본고에서 다룬 단체에 관한 중요 주제들로 정리된 정보의 덩어리들이 단체가 그 여정에

서 만나는 거친 물살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주제어: 신자 단체, 단체 목적, 단체 설립, 단체 통치, 단체 청산.